

##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업서기보(운전직류)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

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업서기보(운전직류)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2일  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### 1. 최종합격자 명단

임용예정직급	모집단위	응시번호	성명
공업서기보 (운전직류)	포항국토관리사무소	포항-011	이○재
		포항-023	황○옥

### 2. 최종합격자 제출서류(필수)

#### ○ 제출서류

- ① 신원진술서 2부 <서식1> \* 반명함판 컬러사진(최근 3개월내 촬영) 부착
-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부 <서식2>
-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  
\*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
- ④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 <서식3>  
\* 신체검사 후 검사서 발행까지 3~4일이 소요되므로 제출기일에 늦지 않도록 유의  
\*\*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」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

#### ○ 제출기한: **23. 10. 19.(목) 18:00까지** 도착

#### ○ 제출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송부 중 선택

- 방문가능시간: 09:00 ~ 18:00 [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- 등기우편주소: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,  
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

### 3. 기타 사항

- 임용예정일은 '23. 11월 중으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- 임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포기서(서식 4)를 제출(직접 또는 등기우편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, 임용 당일 퇴직 및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순번에 의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- '현 직장 업무의 계속' 등을 이유로의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(☎ 051-660-1015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신 원 진 술 서

※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☑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성 명		한 자		주민등록번호		<b>【 사 진 】</b> 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 · (3.5cm×4.5cm)	
등록기준지							
주 소							
실거주지							
직 장	직장명 : 소재지 :			연 락 처	직장전화 : 휴 대 폰 : E-mail :		
국 적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한민국	<input type="checkbox"/> 복수국적 국가명:	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국적 국가명:	배우자 및 자녀 국적			
자격·면허							
재 산	본인 및 배우자	부동산 : 만원,		동산 : 만원,		채무 : 만원	
	미혼 자녀	부동산 : 만원,		동산 : 만원,		채무 : 만원	
정당·사회 단체 활동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단 체 명		기 간		직 책	
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		. . ~ . .			
병 역	본 인	군 별	병 과	최종 계급	기 간		미필 사유
	자녀 (성명)				. . ~ . .		
	자녀 (성명)				. . ~ . .		
학 력 (고교이상)	학 교 명	기 간		전공 학과	학 위	소 재 지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
210mm×297mm [백상지(80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/m<sup>2</sup>)]

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국가정보원, 국방부 및 경찰청은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,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및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,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성명(한자 포함)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, 주소, 실거주지, 직장(직장명, 소재지 포함), 연락처(직장전화, 휴대폰, E-mail 포함), 국적(배우자, 자녀 포함), 자격·면허, 재산(배우자, 미혼 자녀 포함), 병역(자녀 포함), 학력(학교명 등 포함), 경력(기관, 업체명 등 포함), 해외거주사실(거주목적 및 동반가족 등 포함), 가족관계(부모, 자녀, 배우자 부모 및 북한거주가족 등 포함), 친교인물(성명, 직업 등 포함)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동의함 [ 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동의하지 않음 [ ]

■ 민감정보 처리 안내

항목	정당·사회단체 경력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☞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동의함 [ ]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동의하지 않음 [ ]

■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

항목	주민등록번호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[ ]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신청인(대리인):    (서명 또는 인)

(필요시) 법정대리인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연락처:

##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-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. 이하 동일)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  
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- 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- 본인(가족 포함)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 「공공기록물관리예관법률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</li> <li>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</li> </ul>

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  
 성명 (서명)

- 본인 및 가족 동의(자녀는 결혼·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,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)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	서 명	
		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
본인			자필서명	자필 서명
배우자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
※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(밑줄은 민감정보)

본 인(예시)	가 족(예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, 공무원인사기록(행자부·인사처)</li> <li>■ 주민·<u>범죄경력·수사·수배 조회자료</u>(경찰청)</li> <li>■ 출입국자료(법무부)</li> <li>■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</li> <li>■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</li> <li>■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</li> <li>■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(행자부)</li> <li>■ 출입국자료(법무부)</li> <li>■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</li> <li>■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</li> <li>■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</li> <li>■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</li> </ul>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

< 서식 3 >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1. 1. 5.>

(앞쪽)

**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**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사 진 (3.5cm × 4.5cm) 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
⑦ 재 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**검 사 내 용**

키	cm	체 중	kg
허리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 ) 우: ( 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 좌: ( ) 우: ( )
종 양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호 흡 기 질 환		심 혈 관 질 환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신장/비뇨기계질환	
내 분 비 질 환		혈 액 질 환	
신 경 질 환		피 부 질 환	
근골격계 질 환		안 질 환	
정 신 질 환		흉부 X선 검사	
기 타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 ]합 격 [ 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210mm × 297mm 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- 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 -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 -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- 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-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- 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결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- 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-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   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 -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- 나.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   - (작성 예시) 임신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- 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 -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지 않음
   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     - 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 -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  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   -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- 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